

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33863
결재일자	2014. 12. 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자활주거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
김정미	최봉운	남강우	12/24 代최성연	
협조				

2015년 취로형 근로사업 추진 계획



성 동 구

(사회복지과)

2015년 취로형 근로사업 추진 계획

관내 근로 가능한 만 80세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취로형 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근로욕구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■ 구청장방침 사회복지과-21401호(2006.10.16.)

「저소득층 취로형 근로사업 실시 계획」

II 추진계획

■ 사업기간: 2015. 1. 2. ~ 2015. 12. 31.

■ 사 업 비: 총 381,176천원(전액 구비)

사회복지과, 자활사업육성, 저소득가구자활지원, 취로형근로사업, 시설비 및 부대비, 시설비(401-01)

■ 사업내용: 지역환경정비,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

■ 참여대상: 월 80명

- 근로 가능한 만 80세 이하의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수급자 제외 (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유지형, 민간위탁기관 자활사업 참여)
- 만 65세 이하의 차상위 자활 등 저소득 주민은 민간위탁기관 자활사업 우선 참여
- 근로가능자는 자활사업 지침 근로능력자 판정기준에 의거

■ 추진기관: 17개동 주민센터

■ 근로조건

- 근무시간: 1일 5시간(09:00~15:00 원칙, 근무시간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용 가능) 주 4일, 월 15일 이내 원칙
- 임 금: 일 24,800원(실비 3,000원 포함)
- 주·월차수당
 - 주차수당: 미지급
 - 월차수당: 지급.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 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 휴일 부여
(단, 실제 근로 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 한함)
- 급여지급 방법
 - 근무월 익월 5일 이내 월 단위로 지급(월 중간에 근로 종료된 경우에도 익월 5일 이내 지급)
 - 참여자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(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지급)

III 참여신청 및 관리

■ 참여신청

- 신청기간: 2015. 12. 23. ~ 12. 27.
 - ※ 취로형 근로사업 기존대로 유지하며 예산 절감 및 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참여 제한.
- 신청절차: 참여희망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→ 관할동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→ 사회복지과로 참여 신청
 - 차상위 이하 판단 기준: 차상위 자활 선정 기준에 준함
 - 만 65세 이상 신청자: 행복e음 기초노령연금 소득·재산조사 참고
 - 만 64세 이하 신청자: 통합조사팀 소득·재산 조사 의뢰
- ※ 기존 참여자 우선 배정 및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자 선정 철저(신규 및 총원 참여 배제)

■ 참여자 관리

-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)
 - 매월 임금지급조서 제출시 안전교육결과 통보
- 대상자의 정기적인 건강 관리
- 안전관리
 - 여름철 한낮 무더위로 인한 일사병 주의,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 외부 작업 자제
 - 폭설, 한파(기온 영하 10°C이하) 작업 중지, 빙판길 유의
 - 겨울철 작업 전 스트레칭으로 긴장 이완, 체온 유지를 위한 방한에 대비 철저
 - 건강상 문제로 근로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 참여 중지 독려
 - 기타 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사업 추진

II 행정사항

■ 사업 추진 철저 - 각 동 주민센터

- 참여 신청 시 소득, 재산 조사 및 승인 요청 철저
-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 조건 및 보안 각서 요청, 서명 받아 동 자체 보관
- 참여자 안전 관리 철저

- 붙임 1. 근로형 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부.
2. 참여 조건 및 보안 서약서 각 1부.
3. 일일근로 참석부 1부.
4. 자활근로 현장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1부. 끝.